

『구미시 인문학 진흥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교상 의원 외 7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가 인문학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인문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구축하고,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1조 ~ 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인문학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,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5조)
- 인문학진흥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4조)
- 인문 활동 장려를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- 인문주간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6조 ~ 제17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 시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높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교육 및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·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